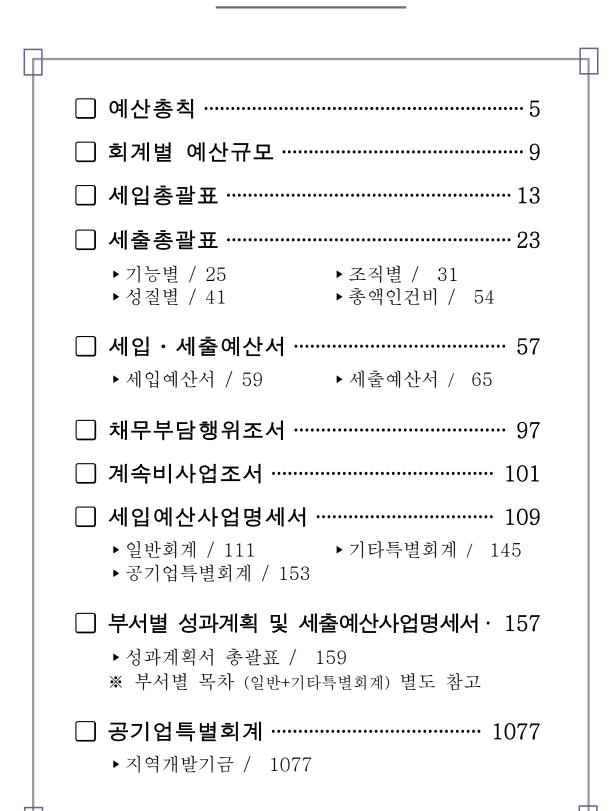
내내 목 차



-1-

-2-

🦳 ※ 부서별 목차 (일반+기타특별회계)

*	부서별 목차 (일반+기타특별회계)	_
μı	▶ 대변인실 167	에너지자원과 / 587	
	▶ 글로벌사업단 177	자연환경연구사업소 / 595	
	▶ 감사관실 ······ 191	산림개발연구원(지원포함) / 604	
	▶ 기획조정실 199	▶ 경제진흥국 ······ 635	
	기획관실 / 201	경제정책과 / 637	
	예산담당관실 / 211	기업지원과 / 649	
	법무통계담당관실 / 216	투자유치과 / 659	
	정보화담당관실 / 221	투자기반조성과 / 663	
	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/ 231	전략산업과 / 671	
	서울사무소 / 235	자원개발과 / 679	
	▶ 자치행정국 ······241	▶건설방재국 ······ 683	
	총무과 / 243	지역도시과 / 685	
	자치정책과 / 261	건축주택과 / 691	
	세정과 / 271	토지자원과 / 697	
	회계과 / 275	도로철도교통과 / 702	
	비상기획과 / 279	방재담당관실 / 713	
	▶문화관광체육국 285	도로관리사업소(지소포함) / 725	
	관광정책과 / 287	▶ 동계올림픽추진본부 751	
	관광마케팅과 / 296	▶ 소방본부 ······ 765	
	문화예술과 / 305	소방행정과 / 767	
	체육진흥과 / 322	방호구조과 / 776	
	국제관광정보센터 / 333	종합상황실 / 784	
Ι.	디엠제트박물관 / 339	소방학교 / 792	
	▶ 보건복지여성국 345	소방서(14개) / 798	
	복지정책과 / 347	▶ 의회사무처 ······ 857	
	경로장애인과 / 370	▶농업기술원 ······ 871	
	여성청소년가족과 / 389	농업기술원 / 873	
	보건정책과 / 412	농식품연구소 / 919	
	식품의약과 / 431	옥수수연구소 / 925	
	여성가족연구원 / 440	특화작물연구소 / 932	
	▶농정국 ······451	인삼약초연구소 / 941	
	농어촌정책과 / 453	미래농업교육원 / 948	
	친환경농업과 / 464	▶강원도립대학 ······· 959	
	농식품유통과 / 476	▶ 환동해본부 ······ 975	
	축산진흥과 / 484	기획총괄과 / 977	
	농산물원종장 / 494	수산정책과 / 984	
	감자종자진흥원 / 500	어업지원과 / 994	
	축산기술연구센터 / 508	해양항만과 / 1001	
	가축위생시험소(지소포함) / 515	수산자원연구원 / 1008	
	▶ 녹색자원국 539	수산기술지원센터 / 1015	
	환경정책과 / 541	민물고기자원센터 / 1025	
	맑은물보전과 / 558	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/ 1032	
	산림자원과 / 567	▶ 인재개발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H-1	산림소득과 / 576	▶ 보건환경연구원 ······· 1053	<u>г</u>

-4-

예 산 총 칙

-6-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					(단위 : 천원)
	Ŧ	문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茶	계		3,717,082,420	111,512,473
ol	<u> </u> 반	গ	계	3,259,300,000	97,779,000
	E B	র	계	457,782,420	13,733,473
	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		202,300,000	6,069,000
	기 타 특	병 호	비계	255,482,420	7,664,473
	•강원도	립 대 학	운 영	9,221,420	276,643
	•의료급	여 기 금	운 영	233,800,000	7,014,000
	• 학 교 용	지 부	담 금	12,461,000	373,83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-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,659,346천원으로 한다.
-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7-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